

2024년 예산총칙

제1조(예산의 규모) 수영구 가족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4,234,280천원으로 한다.

제2조 (예산의 내역) 세입·세출 내역은 세입·세출 명세서와 같다.

(단위: 천원)

| 세입 | | 세출 |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총 | 계 | 4,234,280 | 총 | 계 | 4,234,280 |
| 보조금수입 | 국고보조금 | 2,727,456 | 사무비 | 인건비 | 695,411 |
| | 시도보조금 | 801,894 | | 업무추진비 | 12,840 |
| | 시군구보조금 | 703,542 | | 운영비 | 128,426 |
| 사업수입 | | - | 재산조성비 | | 7,200 |
| 전입금 | | 1,000 | 사업비 | | 3,389,015 |
| 잡수입 | | - | 전입금지출 | | 1,000 |
| 이월금 | | 388 | 잡지출 | | 388 |

제3조 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 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.

제5조 (예산의 전용)

1.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, 항,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2.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3.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, 항, 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관, 항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6조 (예산의 집행)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.

